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18

발의연월일: 2024. 10. 25...

발 의 자:김영환·진선미·윤호중

임오경 · 오세희 · 박홍근

진성준 • 박용갑 • 정진욱

허성무 • 박민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10억 미만의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카드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납부세액에서 연간 1.3%를 공제해 주고 있음.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과표양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과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수익저하로 고통받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매출에 따른 수수료와 과표양성화에 기여하는 세정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1.3%에서 0.65%로 50%를 축소할 예정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드수수료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1.3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
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른 세액공제 등) ①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	
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	
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	
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	
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	
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1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	가
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u>대통</u>	<u>10</u>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 외한다)

나. (생 략)

- 2. (생략)
-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 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 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② ~ ⑤ (생 략)

억원	
)

나.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3. -----(연간 1천만원을한도로 한다):--------- 1.3퍼센트

② ~ ⑤ (현행과 같음)